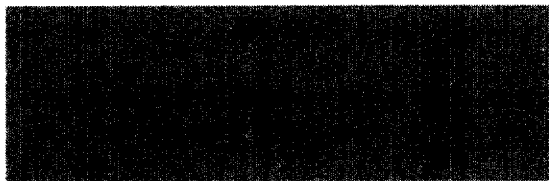


민주주의 이행과 인권: 아르헨티나와 칠레*

박병수(경희대 아태지역연구원 객원조교수)



I. 서론

1980년대 중반 이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치체제 이행을 경험한 제3세계 국가들은 권위주의체제하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1970년대 군부정권의 극심한 인권탄압을 경험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은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탄압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민주정부에 의한 인권 문제 해결은 권위주의 통치 유산으로부터의 명확한 단절을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정부가 과거 인권탄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점은 민주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 2002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 내용은 기존 권위주의체제의 세력들과 민주정부간의 세력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구 권위주의 세력들은 청산 대상이면서도 민주정부 하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과 결부된 인권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다. 따라서 민주정부가 인권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도력과 사회적 지지에 기초하여 권위주의세력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민주정부들의 미흡한 인권문제 해결은 민주주의체제 구축을 제한시켰다(양동훈, 1994: 464). 이처럼 비록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가 정기적이고 비교적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표선출, 정당기능의 활성화, 인권개선 등으로 기본적인 제도들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군부의 영향력 지속, 사회불평등의 심화, 반복적인 경제위기 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는 기존 민주주의 이행론에서 가정했던 민주주의 공고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는 '보호민주주의'(protected democracy) 또는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로 평가되었다.¹⁾

본 논문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사례로 선정한 것은 주제와 관련된 두 사례의 상반성 때문이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반면에 칠레의 경우는 인권탄압 범죄 해결이 진상규명에 국한되었을 뿐 관련자 처벌이나 정의구현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과거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상반성은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요인들과 민주주의 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인권문제 해결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1) '보호민주주의'는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신생 민주정부가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 하에서 정책적 제한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Loveman, 1994), '위임민주주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민주정부 하에서 비록 경쟁을 통한 대표선출에는 민주주의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경제위기와 정당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과 전문관료들에 위임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수에 집중되는 라틴아메리카형 신중 민주주의를 말한다(O'Donnel, 1992).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민간정부 하에서 과거의 인권문제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만약 양자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이행과 인권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인권문제 해결의 저해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인권문제 해결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유형, 인권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민주정부 통치엘리트의 인권문제 해결의지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 간의 인권문제 해결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II. 민주주의 이행과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의 어려움

1. 민주주의 이행과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논의

라틴아메리카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과 관련된 연구는 민주화 이행과 인권과의 관계, 민-군관계와 인권문제 해결,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과 인권문제 해결과의 관계 등을 주로 다루었다.

먼저, Garretón(1996)은 민주화 이행에서 인권문제의 본질과 인권문제 해결과정과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검토했다. 그는 민주정부 하에서의 급진적 인권정책의 결과가 성공적인 민주화로 연계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하면서 인권문제는 기존 권위주의 정권에서 물려받은 유산이고, 민주정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군부 등의 중요행위자들의 세력관계가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인권문제 해결 문제과 민-군관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논의들이다. 이영조(1993)는 민주정부에서 군부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환경에 있던 아르헨티나를 사례로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에서 민-군관계의 재편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그는 알폰신(Raúl Alfonsín) 정부가 군사정부 최고 지도부 처벌, 군예산 삭감, 군 지휘계통 정비 등을 통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군대의 영향력을 완전히 극복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cuña와 Smulovitz(1996)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3개국 모두 군부가 신생 민주정부를 감독하는 제도적 역할을 모색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실패했고, 칠레에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과 민주정부하에서의 민-군간 세력관계, 군부와 민주정부 각각의 통합정도 등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Hunter(1998)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해 처벌하려고 했던 민간정부의 입장과 기존의 특권을 유지하고 과거의 인권탄압 범죄에 대해 사면을 추구했던 군부간의 갈등과 타협을 '전략상호행위 모델'(strategy interaction model)이라는 게임이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설명했다. Hunter는 군대의 무력저항을 우려한 민주정부의 입장과 인권 관련 이외의 문제수용을 통한 정부와의 갈등약화를 지향했던 군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인권탄압 관련자 처벌이 미흡했던 반면에 국방비예산 감축, 군대규모 축소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양측간의 타협과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인권문제 해결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광재성(1998)은 칠레를 사례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한 민주정부의 처리문제라는 좁은 의미의 인권과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차원을 넓은 의미의 인권을 다루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칠레는 좁은 의미의 인권차원에서는 민주정부의 정책능력 부족과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으로 진실규명으로 제한되고 정의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

속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넓은 의미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뛰어넘는 '평등지향적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vans(2001)는 장기간의 경제불안과 경제위기 하에서 민주정부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인권문제 보다 경제안정화와 경제발전 논리를 우선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유산과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양동훈(1996)은 기존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연구가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과 인권문제 해결,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군관계에 집중되었다고 평가하고 보다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 초기 민주정부의 권위주의 유산에 대한 정책과 민주주의체제 공고화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특히 초기 민주정부의 성격이 권위주의 유산 청산과 민주주의체제 공고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양동훈은 권위주의체제 유산을 형태적, 제도적, 정책적, 관행적, 이념적, 구조적 유산 등으로 분류하고²⁾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민-군관계와 군부역할 재정립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유산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각각 민주주의 이행, 민-군관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권위주의 유산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민간정부의 과거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들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사례로 민주화 이행기의 신생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의 차이점을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유형과 주요 집단들의 세력관계라는 구조적 변인과 민주정부 지도부의 인권개선 의지와 태도라는 행위자적 변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일 과정

2) 민주주의 정부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권위주의체제의 각각의 유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양동훈의 논문(1996, 175-177)을 참조바람.

으로 인식했던 권위주의 체제 붕괴과정과 민주주의 체제구축 과정을 분리할 것이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은 크게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와 민주주의 체제구축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³⁾ 이 두 과정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된 독자성을 지닌다. 따라서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은 민주주의 체제구축 과정에 대한 상당한 규정력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 체제구축과정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정부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구 권위주의 집단 간의 세력관계와 민주정부 지도자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따라 체제구축과정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민주주의 이행과 인권문제해결의 저해요인

민주주의 이행과 인권문제 해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자. 먼저, 민주주의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한 공직 교체, 공직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경쟁, 언론의 자유,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존중과 시행, 정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 제정 등의 기본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Loveman, 1994: 108). 또한 민주주의는 모든 집단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경쟁의 불확실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주요 정치세력들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순응할 의지가 확고한 정치체제이다(Przeworski, 1986; 양동훈, 1994). 또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법에 의한 통치와 인권에 대해 확실히 보장하는 체제로의 전환과정이고 군부를 민주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이다(Acuña & Smulovitz, 1996). 문제는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이 권위주의체제 붕

3) 이 두 과정에 대한 명칭은 논자들마다 다양하다. Przeworski(1991)는 민주주의 이행 과정과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으로 분류했고, Garretón(1994)은 민주주의 이행과 민주주의체제 공고화로 나누었고, 양동훈(1994)은 권위주의 체제 붕괴와 민주주의 체제구축과정으로 구분했다.

과 이후 가능한 한 경로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뢰밭’이라고 표현 되듯이 민주화 이행과정은 군부권위주의 유산과 관행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주의로의 역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과정이다(Przeworski, 1991).

민주화 과정과 인권문제 해결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법에 의한 통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들의 부당한 권력행사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정의실현은 신생 민주정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제기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경쟁세력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거나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초기 민주정부들은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인권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따라서 민주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기존 권위주의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양동훈, 1996: 179, 192).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더 민간정부가 인권문제를 해결해야될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통한 정의실현을 통해 민간정부의 인권보장 의지 천명과 미래 인권존중 기반 구축이다. 둘째는 원칙에 입각한 인권문제 처리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과거의 인권탄압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 군대, 비밀기관 등 구체제 관련자들이 폭력적으로 재집권하려는 기도를 제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리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피해를 보상하여 신생 민주정부가 인권과 법에 의한 통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믿음을 확립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신생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 과제 수행의 어려움이다.

인권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던 첫 번째 요인은 민주정부의 철저한

인권문제 해결시도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비록 군대가 정치에서 병영으로 철수했지만 신생 민주정부 하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되는 상황에서 민주정부가 인권탄압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인권단체의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과거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경우 권위주의 세력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가 위협받고 분열과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Benomar, 1994: 4; Garretón, 1994: 224; Beetham, 1995). 이러한 점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민주정부 통치엘리트들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중심문제로 인식하고 인권문제 해결은 부차적 문제로 고려했다. 군사정부 퇴임 직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 아르헨티나 알폰신 대통령은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인권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관련자 처벌을 추진했다. 알폰신 정부의 진상규명과 정의실현 노력이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이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민주화 이행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⁴⁾

민주정부 하에서 권위주의체제의 인권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은 만연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해 만연된 경제우선 논리였다. 라틴아메리카 신생 민주정부들은 1980년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채증가, 경제성장을 정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그 동안의 안정화정책 하에서 희생되어온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계급들의 사회적 저항을 야기시켜 대중적 분노와 저항, 폭동, 군부 쿠데타 기도 등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초기 민주정부는 사적 자본에 대한 지지, 경제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리, 민군관계에서 잠재적 위기에 대한 관심 등의 모습을

4) 이러한 경제와 경교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민간정권의 출현에 대한 조건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든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택하는 민주화 방향으로 나아갔다(Méndez & Mariezcurrena, 2000: 171-172).

보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부재는 초기 민주정부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시켰다. 대표적 사례가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정부이다. 알폰신 정부는 초기의 강력한 인권문제 해결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사회적 긴장고조와 더불어 군부의 반복적인 쿠데타 등의 어려움 속에서 정치협약과 권력분담을 야당인 정의당에 제안하였고, 알폰신은 임기 6개월을 남긴 1989년 6월 30일 사임을 공표했다. 1989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와의 타협적 태도를 견지해온 정의당의 매넴(Carlos Menem)이 당선되어 아르헨티나에서의 인권문제 해결의 노력은 사실상 무산되었다(양동훈, 1996: 187-188; Loveman, 1994: 114-115; Evans, 2001).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던 세 번째 요인은 신생 민주정부의 등장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신생 민주정부는 불법적 처형, 실종, 고문, 비밀감금 등 과거에 인권을 탄압했던 군부권위주의체제와의 타협과 협상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다(Benomar, 1994: 3). 비록 신생 민주정부가 권위주의 세력의 직접적 후계자가 아니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이행과정에서 권위주의 세력과의 협상과 타협은 그들의 정책결정 능력을 제한시켰다. Przeworski는 이러한 딜레마를 이행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신중함이 이행 이후 정책적 단호함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⁵⁾

이처럼 인권문제 해결을 통한 민주적 정통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현실적 요인들로 인해 신생 민주주의 체제는 그 과제수행에 소극적이었다.

III.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인권문제 해결의 차이와 그 변인

민주정부에 의한 인권문제 해결은 권위주의체제의 유형과 성격,

5) Przeworski에 의하면 권위주의세력과의 타협과 협상으로 귀결되는 신중함이 권위주의세력의 특권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Przeworski가 지적했듯이 이행 이후 민주세력이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후회하지만 이행과정에서는 신중함 이외의 다른 선택적 대안이 부재하거나 약했다는 점이다(Przeworski, 1991: 78-79).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의 특성, 초기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의 개별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받는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앞의 두 요인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체제의 성격과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이 향후 민주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요인에 의해서 민주화 과정의 인권문제 해결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초기 민주정부의 성격과 역할이 권위주의체제 유형과 체제붕괴 유형에서 유발되는 제약들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양동훈, 1996: 178).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아르헨티나와 칠레 2개국은 모두 19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심각한 인권탄압을 경험했고, 1980년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모두 민간민주정부 하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진상규명과 정의실현 정도,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 구체적 활동과 사업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신생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의 국가간 차이를 유발시키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자.

1. 권위주의체제 붕괴 유형과 권위주의세력과의 관계단절 정도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인권문제 해결 차이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인이 양국의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의 차이와 그로 인한 민주정부의 기존 군사정부와의 관계단절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체제 붕괴 유형은 와해(collapse)와 타협(transaction)으로 분류된다.⁶⁾

먼저 아르헨티나의 경험처럼 와해를 통한 이행의 경우, 기존 권위

6) 양동훈(1994)은 이러한 권위주의 붕괴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와해(collapse), 퇴장(exit), 협상(transaction), 탈출(extraction)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붕괴유형을 너무 세분할 경우 각 유형간의 차이점이 불명확하고 사례적용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분류를 따라 와해와 타협으로 권위주의 체제 붕괴유형을 구분하였다.

주의체제는 이행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과 목인을 확보하는 향후 민간정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병영으로 퇴각하기 때문에 민간정부에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와해를 통한 이행으로 등장한 민간정부는 정책결정에 대한 군부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

알폰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사평의회' 장군들에 대한 기소를 명령했다. 또한 실종자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하에 '실종자국가위원회'(CONADEP)를 창설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저명한 지식인이자 작가인 사바토(Ernesto Sábato)가 위원장이었던 CONADEP는 모든 국가기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경찰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CONADEP 실종자 조사에 인권단체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들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특히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인권조직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CONADEP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의 실종자들에 대한 1년 동안의 조사활동을 정리한 '절대 다시는 안 된다'는 뜻을 지닌 'Nunca Más'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군사정부 하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실종자들의 사례를 8,961로 분류하고,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실종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실종자들에 대한 방대하면서도 상세한 조사, 기록으로 공적 권위를 획득하였다(Nunca Más, 1984).

반대로 칠레의 경험처럼 타협을 통한 이행의 경우, 권위주의체제는 저항블록과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행과정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민간정부의 정책결정 범주를 제한시켰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탄압에 대한 처벌을 면제시킨다는 사면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향후 민간정부에서 인권문제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군부역할 강화를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장에도 불안하면 군부는 민간정부에서 군인 한 명이라도 구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노체

트는 1990년 취임사에서 군인에 대한 외부재판은 있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⁷⁾ (Panizza, 1995: 171-172).

아일린(Patricio Aylwin) 정부 시기에 구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의 조사가 있었다. 아일린 정부는 군정 하에서 실종되거나 학살당한 희생자 2천여 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전권을 수여하는 ‘아일린법안’을 제출했으나 군부의 완강한 반대와 인권조직들의 미온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아일린 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지만, 구속자와 실종자 명단 발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 건립, 국영TV를 통해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고발 프로그램 방영 등 부분적 성과도 있었다. 특히 아일린 정부는 피노체트 집권기간인 1973년 9월부터 1990년 3월까지 17년동안 사망했거나 실종을 초래한 인권탄압 사건조사를 목적으로 1990년 5월 행정명령에 의해 ‘진실과 화해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ocnciliación)를 설치했다. 9개월 동안 60여명의 요원들이 활동한 ‘진실과 화해 국가위원회’는 4천 건 이상의 진정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2,025건은 비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인권범죄로, 90명의 희생자들은 무장저항 그룹에 의해, 그리고 164건은 양측 모두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결론 내렸다(Benomar, 1994: 9-10). 1991년 발간된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⁸⁾는 과거 인권탄압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인권탄압 요인 분석, 미래 인권탄압 재발을 위한 조치 등의 권고를 포함했다(Panizza, 1995: 173-174). 아일린 정부는 과거 인권문제 해결을 진상규명으로 제한시켰다. 이처럼 아일린 정부가 인권문제 해결 작업을 정의실현 차원으로까지 진행시키지 못했던 요인에는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위협도 있었다. 퇴임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피노체트와 군대는 군인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결코 허용하지

7) 피노체트는 퇴임사에서 “군인에 대한 외부 재판은 있을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8) 총 1천 7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는 위원장인 라울 레티크(Raúl Rettig)의 이름을 따서 ‘레티크보고서’(Rettig Report)로 불리었다.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했다(Acuña & Smulovitz, 1996: 31).

이와 더불어 기존 군사정부와의 단절성의 정도로 이것이 이후 신생 민주정부 하에서 추진하는 인권문제 해결 작업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경제위기와 전쟁패배 등으로 인한 군부의 급격한 후퇴로 과거체제와의 단절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화로 이행된 국가에서는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작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칠레의 경우처럼 군부와 민주세력간의 타협을 통해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었던 국가에서는 민간정부에 의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의 부도덕한 국가권력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정의실현 작업이 군부의 견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2. 시민사회 능력과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 권위주의 정부 또는 군부의 영향력이 강했던 민간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군부는 국가테러에 기반한 독재적 통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군사정부는 반체제 세력들의 반란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대량학살, 처형, 고문, 불법체포 등을 자행했다. 공개적인 저항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행된 군사정부 하에서의 극심한 인권탄압에 대해 정치세력이나 사회세력은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오로지 정치적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만이 거의 유일하게 국가테러에 대항할 수 있었다. 희생자의 어머니들 중심의 여성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권운동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와 정치적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적 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외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인권단체들의 능력과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제도의 존재, 내부적 연대를 통한 인권단체들의 정통성 유지 등의 조건이 구비된다면 인권단체들은 권위주의체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고,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Méndez & Mariezcurrena, 2000: 167-169; Panizza, 1995: 168-169; Dietz, 1997).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아르헨티나 인권운동은 통일적이거나 강력하지 못했다. 인권운동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교회는 독재정부를 지지했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이 교회 등의 조직적 도움없이 정보수집을 독자적으로 해야만 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제인권기관들의 보고서 작성은 국내 인권단체들의 부족한 자료수집으로 직접 보고서 작성자들이 현지를 방문 조사해야 했다. 반면에 칠레 인권운동은 교회로부터의 인권운동 보호와 지원, 인권운동의 높은 통합성, 국가권력 기구의 활동과 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등으로 아르헨티나 인권운동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역할은 인권운동에 전국적 운동의 토대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인권조직들은 전국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상층조직의 결성으로 여러 조직들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칠레에 대한 국제인권기구들의 보고서작성은 인권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 국가 모두의 인권조직들과 유가족 등은 각각 신생 민주정부에 희생자들이 어떻게 살해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에게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실종자들의 희생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였다. 또한 이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생존자와 가족들과 일부 양심 고백한 인권탄압 가해자들부터 정보를 수집, 취합,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인권단체와 유가족들은 진실규명만으로는 지난 시기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진상규명은 결코 국민적 화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행기 신생 민주정부하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는 권위주의체제 붕괴 유형과 군부의 영향력 정도, 민간정부의 성격 등과 밀접히 관계된 것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시민사회의 인권탄압 관련자 처벌 요구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비교적 미약하고, 알폰신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결부되어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권탄압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반대로 칠레의 경우 인권관련 단체들이 군사정부 하에서 높은 통일성과 전국적 차원의 인권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정부 하에서는 피노체트의 강력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상황과 '진실은 밝혀져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정부의 태도, 종교적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때문인지 인권단체들은 군부정권의 과거사 처리를 진상규명 차원 이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3. 민주정부 통치엘리트들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의지

앞에서 살펴본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과 군사정부와의 단절성은 국가간 인권문제 해결 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신생 민주주의 정부의 태도를 규정하는 주요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수립된 민주정부의 지도력과 군부에 대한 정책도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정부가 높은 지도력과 적절한 전략을 발휘하거나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획득할 경우, 민주정부는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권위주의체제에서 군사정권의 통치가 비효율적이었거나 정치적 탄압에 직접 연관되었거나,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부패했거나, 대외적으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은 크게 위축된다고 할 수 있다(양동훈, 1994: 467).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정부는 칠레의 아일린 정부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했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9) 1983년 10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사면법, 인권탄압, 패

전, 부정부패와 같은 인권문제 해결이 중요 의제로 되었다. 급진시민연합(Unión Cívica Radical)의 대통령 후보인 중도좌파적 성향인 알폰신은 정의당의 군부와의 타협적 자세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을 통한 명확한 인권문제 해결을 주장했다.¹⁰⁾ 반면에 페론당 중심의 선거연합전선인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과 그 대통령 후보인 변호사 출신인 루데르(Italo Luder)는 소급입법 금지의 헌법원칙을 들어 사면법의 폐지에 반대하고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인권탄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군부에 보냈다. 선거 결과는 도시 중간계층과 여성, 노동자, 젊은 세대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알폰신은 대통령 선거에서 총 600명의 선거인단중 317표를 획득하여 259표의 지지를 받은 루데르에 승리했다.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는 알폰신이 51.8%, 루데르가 40.2%를 획득했다.¹¹⁾

알폰신은 취임사에서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실종자문제 처리와 인권탄압에 대한 법적 처벌을 통한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했던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알폰신은 취임 직후 군부권위주의체제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탄압을 정당화시키고 인권탄압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사면법(민족평화법)을 폐기시켰다. 그리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군사정부 하에서의 실종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

-
- 9) 알폰신은 과거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크게 3개로 분류했다. 그 첫째는 완전한 망각(forgetfulness)으로 이는 사면법과 단순한 비활동(inaction)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이 방식은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반복되었다고 했다. 둘째는 어떤 형식으로든 인권탄압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처벌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된 적이 없다. 셋째는 대표적인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선택적 처벌이다. 이는 극심한 인권탄압은 처벌된다는 사례를 만들어 향후 그러한 인권탄압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Alfonso, 1994: 18).
 - 10) 알폰신 진영은 페론주의정당과 군부협약으로 구체화된 '납은 코포라티즘적이고 권위주의적 아르헨티나'와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아르헨티나'로 선거구도를 구축하려고 했다.
 - 11) 참고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도 급진시민연합이 총 254석중 129석을 획득하여 과반수 이상을 점하였고 정의당은 111석을 얻었다. 그러나 상원 선거에서는 급진시민연합이 총 46석 중 18석을 얻어 정의당의 21석에 미치지 못했다.

했고 정의실현 차원에서 인권탄압 가해자들인 군사평의회 위원들과 군 최고위층에 대한 제한적 심판을 행했다. 또한 알폰신 정부는 군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참모기구를 통솔하는 내각의 국방부 장관에 민간출신 각료를 임명했다. 또한 1988년 4월 국가보안법을 새로 제정하여 군부가 국내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했고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서 군부를 지휘 통솔하도록 했다. 또한 알폰신 정부는 취임직후 군 장군 정원수를 60명에서 25명으로 축소시켰고, 49명의 고위급 장군들을 퇴임시키고 중하위급 장군들을 고위직에 임명했다(양동훈, 1996: 186-189; Panizza, 1995: 172-173).

알폰신 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야당인 정의당과 의회의 반발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군부와 의 타협적 태도를 보였던 정의당은 알폰신 정부의 과감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이 오히려 군부의 재등장을 초래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인권탄압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반대했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는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오직 군사법원만이 지닐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하면서 알폰신 정부의 처벌을 통한 인권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끝으로 사법부의 태도도 알폰신 정부의 인권문제 해결 작업을 어렵게 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역사적, 도덕적 심판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Benomar, 1994: 11; Acuña & Smulovitz, 1996: 17). 1984년초 불법감금과 납치, 고문 등 인권유린 혐의로 비델라(Jorge Videla), 비올라(Roberto Viola), 갈띠에리(Leopoldo Galtieri) 등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특별히 군사정부 초기 '더러운 전쟁'를 자행한 비델라에 대해서는 살인혐의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CONADEP 보고서를 통한 공식적인 증거에도 불과하고 1984년 9월 재판을 담당할 군사법정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과거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9명 모두를 무죄 판정했다.

이처럼 야당, 의회, 사법부 등으로부터 인권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알폰신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 특히 사법부

에 대한 관정에 불만이 컸던 시민들의 비판에 힘입어 알폰신 정부는 연방법원에 군사정부 지도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문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군사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군사재판에서 연방항소심으로 이관되었다. 연방법원은 공개재판을 통해 9명의 군사정부 지도자들을 과거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1985년 12월 연방법원은 전 대통령 비델라와 전 해군참모총장 마세라(Emilio Masera)에 종신형을, 비올라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이 선고하는 등 5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에 4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비밀경찰의 납치, 고문에 연관되어 있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간부 30명에게도 4년에서 25년이 선고되는 등 370여명의 군정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알폰신 정부의 상대적으로 과감한 인권문제 해결은 하위직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군부쿠데타 기도를 접하면서 현실적 한계를 보였다. 군부 수뇌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로 인해 2천명이 넘는 하위직 장교들이 기소와 처벌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최고위층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반대로 인권탄압의 혐의를 받는 일반장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고 군부의 저항과 반란만을 초래했다. 알폰신 정부는 인권탄압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지시하고 2가지 조치를 단행했다. 하나는 기소중지법(Ley de Punto Final)으로 60일 이내 공식적으로 제소되지 않는 관련장교들은 기소되지 않으며 연방상고법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인권관련 사건을 인계하여 재판하는 것이다. 둘째는 복종의무법(Ley de Obediencia Debida)으로 이는 일종의 사면법으로 상부명령에 따른 준장 이하 장교들의 인권탄압 혐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코(Aldo Rico) 중령의 두차례 군사반란(1987년, 1988년)¹²⁾과 세이넬딘(Mohamed Ali Seineldin) 대령의 군사반란(1988년)은 알폰신 정부를 위협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알폰신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인권탄압 관련 장교

12) 리코 중령은 '캄포 데 마요'(Campo de Mayo) 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부활절반란'으로 불리는 이 반란에 대해 주변부대는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이들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란군은 당시 군 참모총장 에레누(Ríos Ereñu)의 사임과 인권재판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했다.

들에 대한 기소를 중시시켰고, 세이넬딘 대령 쿠데타 직후에는 군 급여 20% 인상과 95달러의 특별 보너스 지급, 중간장교들이 반대하는 육군참모총장 까리디(Jose Dante Caridi) 장군 해임 등의 유화적 조치를 취했다(양동훈, 1996: 188-190). 이러한 알폰신 정부 후반기의 사면조치는 일부 장교들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대한 알폰신 정부의 대 군부 타협책이었다. 또한 알폰신 정부 초기의 강력한 인권정책으로 부터의 후퇴선언이기도 했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미흡한 성과 때문에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의 4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쿠데타 위협은 알폰신 정부에 커다란 압력이 되었던 것이다(이국운, 1995).

사면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1989년 집권한 메넬 정부는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메넬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인권범죄자들을 사면하고자 하였다. 메넬은 사면론자를 국방장관에, 군부장경과를 참모총장에 임명하여 군사정부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켰다. 1989년 10월 8일 메넬이 첫 번째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60명의 게릴라 사면과 교환된 이 사면조치에는 인권탄압 가해자들과 말비나스 전쟁에서 부적절한 역할로 인해 기소된 사람들과 알폰신 정부 하에서 군대반란과 관련해 기소되었던 277명의 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60명이 게릴라 사면과 인권탄압 혐의로 기소된 군인과 경찰피의자 대부분 사면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비델라, 비올라, 마세라 등은 사면에서 제외되었다(Acuña & Smulovitz, 1996: 18). 1990년 12월 메넬의 '추악한 과거를 잊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대화합 조치라는 명분하에 군부정부 시절 인권탄압 가해혐의로 알폰신 재임기에 처벌되었던 많은 군부 관리들을 사면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군정 최고위층 5명과 미국으로부터 신병인도 되어 38건의 살인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장군 1명을 몬테네로 게릴라 지도자 1명과 동반 사면시켰다.

한편, 칠레에서 1989년 선거과정에서 아일린 후보는 인권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의실현과 피해자 보상의 원칙에 따른 해결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것은 미약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아일랜드는 피노체트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사법적 처리를 통한 정의구현과 법에 의한 통치 원칙은 안정적 민주주의의 이행을 위한 화합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아일랜드 정부는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 자행된 인권탄압에 대한 규명작업은 일정정도 추진했지만,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정의실현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포기했다. 1991년 2월 국가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아일랜드 대통령은 3월 4일 TV에 나와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진실을 수용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자고 하여 진실규명차원에서 인권문제 해결을 매듭짓겠다는 점을 밝혔다. 진실위원회 활동을 통한 피노체트 정부 하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은 타협을 통한 봉피라는 유형 속에서 출범하여 인권탄압 가해자들을 처벌할 능력을 결여한 아일랜드 정부가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적 화해를 모색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nomar, 1994: 9-10). 아일랜드 정부는 '진상규명'을 인권문제의 중요한 해결로 보고 정의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화 시기 처음 5년 동안 단 한명의 고위급장교도 기소되지 않았다.

IV. 결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군부 권위주의에서 민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인권문제 해결은 민주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기대되었던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은 국가마다 범위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이처럼 민주정부에 의한 인권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던 요인으로는 신생 민주정부들의 과거청산 보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강조,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하에서의 경제 우선 논리, 군부와의 협상과 타협을 통한 권위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민주정부의 정책적 자율성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위주의체제의 인권문제 해결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사례로 국가별 차이를 노정시킨 주요 변인들에 대해 검토했다. 먼저, 권위주의 붕괴유형과 기존 군사정부와의 단절성 정도로 와해 유형에 의한 권위주의체제 붕괴를 보여준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부는 민주화 이행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들의 특권을 수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에 타협을 통한 권위주의체제 붕괴 유형을 보여준 칠레의 경우 이행과정에 대한 높은 통제력을 기반으로 민주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제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이 이러한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유형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권문제 해결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가 처해있는 구조적 현실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능력과 태도, 민주정부 통치엘리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능력과 태도도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분열과 지역적 한계를 보였던 아르헨티나 인권관련 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알폰신 정부의 인권문제 해결 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대로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일성과 전국적 차원의 운동을 보여주었던 칠레의 인권단체들은 민주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피노체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정부는 취임직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입각해서 최고위급 군장성들을 처벌하였다. 반면에 칠레의 아일린 정부는 여전히 군부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치역학구도에서 '조사는 하되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하에 인권문제 해결을 조사영역으로 제한

시켰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민간정부에서의 인권문제 해결의 차이는 권위주의체제 붕괴유형과 퇴임 이후 군부의 민간정부 통제력, 시민사회의 능력, 민간정부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인권문제 해결 의지 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이러한 변인들이 인권문제 해결에 개별적이라기 보다 상호관련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와해를 통한 체제 붕괴 이후 민간정부에서 군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군사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보다 원칙적인 인권문제 해결을 공약한 알폰신이 당선되었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또한 가능성이 열린 정치 공간 속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반해 군부와와의 타협을 통한 체제붕괴유형을 보인 칠레의 경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과 민간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일린 정부의 인권문제 해결능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시민사회의 인권관련 단체들도 아일린 정부에 그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칠레의 사례는 과거청산의 대상이 청산 주체보다 더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을 때 민간정부의 인권문제 해결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재성 (1998), 「인권의 시각으로 본 칠레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9집, pp.17-49.
- 양동훈 (1994), 「제3세계의 민주화 과정 : 개념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Vol. 28, No.1, pp. 451-481
- _____ (1996),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제9권 1호, pp.176-194.
- 이국운 (1995), 「아르헨티나 인권재판의 전개과정」, 법과사회, 제12호. pp.282-303
- 이영조 (1993), 「아르헨티나의 민선정부와 군부」,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4호, pp.49-71.
- Acuña, Carlos H. & Smulovitz, Catalina, "Adjusting the Armed Forces to Democracy: Successes, Failures, and Ambiguities in the Southern Cone", in Jelin, Elizabeth & Hershberg(1996), *Eric, Constructing Democracy: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Westview Press, pp.13-38.
- Alfonsín, Raúl(1994), "Never Again" in Argentina", *Journal of Democracy*, Vol.4, No.1, pp.14-19.
- Argentina: The Long Road to Truth,
<http://www.web.amnesty.org/ai.nsf/print/AMR130021998?OpenDocument>
- Beetham, David (1995),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the Study of Politics", *Political Studies*, Vol. 43, pp.1-9.
- Benomar, Jamal (1994), "Justice after transitions", *Journal of Democracy*, Vol.4, No.1, pp.1-13.
- Bickford, Louis (2000), "Human rights archives and research on historical memory: Argentina, Chile, and Urugua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5 No.2, pp.159-182.

- Cardenas, Sonia (2000), "Combining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recent scholarship on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5, No.2, pp. 253-267.
- CONADEP (1984), *Nunca Más*,
<http://www.desaparecidos.org/arg/conadep/nuncamas/indice.html>
- Dietz, Henry (1997), "Addressing the Past : Human Right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Argentina, Brazil, and Chile",
<http://altair.chonnam.ac.kr/~cnu518/conf/simpo37.html>
- Edelstein, Jayni (1994), "Rights,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Some comparative notes", Seminar No. 6.
<http://www.wits.ac.za/csvr/papers/papedel.htm>
- Evans (2001), "If democracy, then human rights?", *Third World Quarterly*, Vol.22, No4, pp.623-642.
- Garretón (1996), "Human Rights in Processes of Democratisat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26, pp.221-234.
- Hunter, Wendy(1998), "Negotiating Civic-Military Relations in Post-Authoritarian Argentina and Chil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2, pp.295-318.
- Hayner, Priscilla B. (2001), *Unspeakable Truths: confronting state terror and atrocity*, Routledge.
- Izaguirre, Ines (1998), "Recapturing the memory of politic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31 Issue 6.
- Jelin, Elizabeth & Hershberg, Eric(1996), *Constructing Democracy: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Westview Press.
- Kritz, Neil J. (1995), *Transitional Justice Volume III*,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Lois, Graciela & Lacabe, Margarita(1999), "Search of Vindication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Argentina",
<http://www.derechos.org/koaga/vii/lois.html>

- Loveman, Brian (1991), "Mision Cumplida? Civil Military Relations And The Chilean Political Transition",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 World Affairs*, Vol. 33 Issue 3, pp.35-74.
- Malamud-Goti, Jaime (1991), "Punishment And A Rights-Based Democracy", *Criminal Justice Ethics*, Vol. 10 Issue 2.
- Méndez, Juan E. & Mariezcurrena, Javier(2000),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in Pollis, Adamantia P & Schwab, Peter, *Human Rights : New Perspectives, New Realities*, Boulder,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63-183.
- O'Donnell, Guillermo (1992), "Delegative Democracy?", *Working Paper*, no.172, pp.1-17.
- Oxhorn, Philip (2001), "From Human Rights to Citizenship Rights?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6, No.3, pp. 163-182.
- Panizza, Francisco (1995), "Human rights in the Processes of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Political Studies*, vol. 43, pp.168-188.
- Przeworski, Adam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G. O'Donnell & Philippe C. Schmitter & Laurence Whitehead(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47-63.
- _____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Rettig Report),
<http://www.derechoschile.com/basicos/ddhhchile/rettig/english/rettigengindex1.html>
- Valente, Marcela (1997), "Argentina: Belated Reparations for Victims of

the Dictatorship", *World News*,

<http://www.oneworld.org/ips2/feb/argentina.html>.CT

Abstract

Democratic Transition and Human Rights in Argentina and Chile

Byoung-Soo Park

(Center for Asian-Pacific Studies, Guest Assistant Professor)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human rights debate was centered on how to deal with the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under military regime. The human rights crimes are expected to be settled under democratic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But the punishment of human rights criminals was limited by a lot of reasons, such as the tensions between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human rights, the restrictions of policy autonomy of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priority of economic principles over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crisis and the neoliberal adjustment.

There were striking contrasts in resolving human rights crimes between Argentina and Chile. The Alfonsín government investigated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in the former authoritarian period and punished the criminals for human rights crimes under military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the Aylwin government only investigated human rights crimes but did not punished for human rights criminals. Thes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olicy between Argentina and Chile were due to the type of the collapse of authoritarian regime, the intention to resolve human rights crimes of a new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abilities and attitudes of civil society,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ivilia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Finally, I'd like to assert that these variables mentioned in the above have close relations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the settlement of human rights problems. In Argentina, the transition was made progress through the demise of the former authoritarian regime. The ex-authoritarian groups, especially the military group, couldn't maintain their strength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And the human rights groups positively claimed that the Alfonsin government should settle the problems regarding the human rights crimes and their criminals. In these situations, the Alfonsin government could investigate and punish criminals for human rights crimes. In Chile, however, the transition was made through the transaction between the vested military groups and the democratic ones. The military groups had a great influence in the policy making of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period of its political transition. The civil society groups, such as human rights movement groups, couldn't make an intensive demand that the democratic government punish human rights criminals. In these situations, the Aylwin government didn't try to punish the human rights criminals.

Key Word: Human Rights(인권), Argentina(아르헨티나), Chile(칠레), democratization(민주화), transition(이행), Alfonsin(알폰신), Aylwin(아일린)